

상지대학교 학칙

제정 1974. 04. 01

제831차 개정 2022. 05. 26

제1장 총칙

제1조(대학이념) 본 대학교는 바른 뜻을 숭상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실천으로 지행합일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환경주의를 추구하여 지역 중심 대학으로 대학 자치와 대학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
[전문개정 2018.08.30]

제1조의2(교육목적) 본 대학교의 교육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교육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환경(생태)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08.30]

제2조(편제) ① 본 대학교에는 **한 의과대학, 보건의료대학, 미래인재대학, 미디어문화대학, 경상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예술체육대학, FIND칼리지, 미래라이프대학, 글로벌융합대학**과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6.9.25., 2014.12.16., 2016.05.13., 2018.02.12., 2020.02.07., 2021.09.23., **2022.05.26**)

② 각 대학(본부 직할학부 포함)에 학부(군) 및 전공(학과)을 둔다. (개정 2014.12.16)

③ 학과제로 입학한 사람이 휴학하여 학부(군)제로 복학 시 학부(군)로 편제를 적용한다. 다만, 학부(군)으로 복학한 사람의 제1전공은 기 학과제로 입학한 전공(학과)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타 전공(학과)을 원할 시 신입생과 동일하게 제1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 2005.12.12)

제2조의2(교원의 책임시간)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학기당 1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허락한 교원에 대하여 책임시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04.7.26.) (개정 2018.01.23.)

제3조(학생의 정원)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2.29, 2000.8.23., 2001.8.16, 2002.8.26, 2003.11.21, 2004.4.15) (변경 2005.3.8, 2005.6.8, 2005.11.14, 2007.3.26, 2007.6.27, 2007.11.12, 2008.6.18, 2008.9.1, 2009.10.30, 2010.9.29, 2011.10.4, 2012.11.13, 2013.11.12, 2014.05.22, 2015.06.08., 2016.05.13., 2017.06.27., 2018.02.12., 2019.08.14., 2020.04.10., 2021.04.28., 2022.02.28, **2022.05.26**)

제2장 대학원

제4조(대학원 학칙) 대학원의 학칙은 총장이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7.26)

제3장(삭제 2004.7.26)

제5조 (삭제 2004.7.26)

제4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6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까지로 할 수 있다.

② 한의과대학은 6년(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한다.

제7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8년(16학기), 의학계는 12년(24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할 연한의 2배로 한다.

③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전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사람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다만,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23.)

제5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다만, 2학기는 2주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전일에 개강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9.27., 2018.01.23., 2020.0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 제30조에 따라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집중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항 신설 2020.08.13.)

제10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삭제(2019.12.02.)
4. 국정공휴일 및 일요일
5. 근로자의 날 (호 신설 2019.12.02.)

② 비상사태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이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입학(편입학, 재입학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제12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3조(편입학) ① 편입학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제적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본 대학교 3학년 또는 4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전학년 과정 학점 이수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개정 2015.06.08)

③ 학사학위 소지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의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하지 못하며 학과별 모집인원은 당해 학과 정원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06.08)

- ④ 연계교육특별편입학은 연계교육과정 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3학년에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면서 3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5.26)
- ⑤ 편입학생은 조기 졸업할 수 없다. (신설 2022.05.26)

제14조(재입학) ①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사람과 자퇴한 사람의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의료관련 학과의 재입학은 해당학부(학과, 전공)의 학년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하며, 제48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 2004.2.16, 2006.2.13, 2006.5.22)

② 재입학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재입학시행지침으로 정한다. (항 신설 2002.1.23) (개정 2004.7.26)

제15조(입학지원 서류) 본 대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학전형) ① 대학입학전형(편입학전형 포함)은 본교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해당년도 모집요강에 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09.23.)

- ② 삭제 (1998.3.1)
- ③ 편입학의 전형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2(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삭제 2021.09.23.)

제17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한다. 다만, 입학허가 후 전형과정의 관련 서류 검증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위조, 허위작성, 대필, 기타 사유로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0.02.07)

제18조(입학 등록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유 없이 전항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9조(보증인) (삭제 1998.3.1)

제20조(전과) ① 모집단위(학부, 학과, 전공)간의 이동을 전과라 하며, 전과는 입학 후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게 매 학기 초 허가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특정 학부(군) 및 전공(학과)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허가 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2022.05.26)

- ② 삭제 (1999.7.1)
- ③ 삭제 (1999.7.1)
- ④ 삭제 (1999.7.1)
- ⑤ 삭제 (2022.05.26)
- ⑥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2.29., 2004.7.26., 2018.08.30)

(조 개정 2003.11.21)

제7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1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허가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제2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고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8.08.30)

② 수강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그 설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3조(휴학 및 휴학기간) ①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대학이 인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4.1.24., 2018.08.30)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1., 2014.1.24., 2018.08.30., 2021.05.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재적기간 중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장애학생의 휴학
2. 병역(군입영)
3. 육아(임신·출산)
4. 창업
5. 질병
6. 군입영 대기자가 입대 직전일을 기준하여 해당 학기를 마칠 수 없는 일반휴학의 경우 (단, 제8조에도 불구하고 1학기 종료일은 2학기 개강전일 까지 한다)
(항 신설 2021.05.12.)

④ 전항에 위배될 때에는 제적된다. 등록기한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얻은 사람은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항 변경 2021.05.12.)

⑤ 휴학만료 전까지 복학신청 및 휴학 연기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심의를 거쳐 가사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02.07.) (항 변경 2021.05.12.)

제24조(병역휴학) 삭제(2018.08.30)

제25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매 학기 소정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8.08.30)

제26조(자퇴) 본인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 2018.08.30)

제27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변경 2007.10.1.) (개정 2018.08.30)

1. 이중학적을 가졌다고 인정된 학생
2.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3. 매학기 소정 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학생
4.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5.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학생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학생(호 신설 2007.10.1)

제9장 교과, 수업, 학점 및 졸업

제28조(교과구분) 각 대학의 교과목은 학부(계열)기초, 계열공통,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나눈다. 전공과목은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0.26. 2014.12.16., 2018.01.23., 2021.09.23)

제29조(교과과정) ① 각 대학의 교과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일반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의 장은 학문 분야 평가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호 신설 2008.9.1)

제30조(교과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학기별 취득학점) ① 학생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매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변경 2005.5.31) (개정 2010.10.26) (변경 2013.3.20.) (개정 2014.12.16.) (개정 2016. 11. 07., 2018.08.30)

② 취득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30)

제31조의2(타 교육기관과의 학점교류)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자매결연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학점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해외연수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2.11.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국제학생교류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4.7.26)(조명칭 변경 2012.11.13)(변경 2012.11.13)

제31조의3(원격수업) ①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원격수업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변경 2005.12.12., 2021.05.12.)

② e-러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7.26) (변경 2005.12.12.) (개정 2018.08.30)

(조 신설 2003.3.1)

제31조의4(현장실습) ① 학생의 현장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중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서 실시한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또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30)

②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또는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30)

(조의 호 신설 2005.1.24.) (전문개정 2014.1.24)

제31조의5(특별학점 인정) ① (변경 2013.5.9.) 삭제 (2014.1.24)

② (변경 2013.5.9.) 삭제 (2014.1.24)

③ (항 신설 2013.5.9.) 삭제 (2014.1.24)

제31조의6(예비대학 교과목 학점인정) ① 수시모집으로 입학이 확정된 자는 우리 대학에서 개설한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미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예비대학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의 호 신설 2006.8.8)

제31조의7(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의한 학점 인정) 고등학교 재학 시 대학과목을 선 이수한 경우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7.12.26.) (개정 2018.08.30)

제31조의8(군휴학자 학점취득) ① 군복무 휴학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8.08.30)

② 삭제(2018.08.30)

③ 군휴학자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30.)

제31조의9(경험학습 학점인정) ① 평생교육융합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을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위원회(이하 "학점인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평생교육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경험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의 호 신설 2021.05.12.)

제31조의10[전문과정(마이크로디그리)] ① 세분화된 전문 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과정(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09.23.]

제32조(계절학기) ① 정규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08.30)

② 계절학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7.26., 2018.08.30)

제33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4조(수료학점) ① 각 학년별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야만 수료 할 수 있다.

② 수료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7.26., 2018.08.30)

③ 삭제(2018.08.30)

제35조(졸업) 각 대학의 졸업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간호학과 및 임상병리학과는 140학점 이상, 한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26) (변경 2013.3.20) (개정 2014.12.16.)

제36조(성적인정) 삭제 (1999.2.25)

제37조(제1전공, 다전공 선택과 이수) ① 학부(군)으로 입학하여 선택한 제1전공,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에 대하여 각 전공별 소요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 학부(군)내에서 선택한 전공(제1전공 이라 함)외 다른 전공(학과) 및 타 학부(군)의 전공(학과)을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다전공(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선택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변경 2018.08.30]

[전문개정 2018.08.30]

제38조(졸업과 학위) ① 본 학칙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졸업을 인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2)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2.1.23, 2002.11.26) (호 삭제 2002.11.26) (개정 2003.11.21) (변경 2005.12.12, 2007.11.12, 2008.5.13, 2008.9.1, 2010.2.4, 2010.9.29, 2010.10.26, 2011.10.4., 2012.11.13., 2017.2.28., 2018.02.12., 2018.08.30., 2019.08.14., 2021.05.12., 2021.09.23)

②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을 이수한 사람은 그 학과명을 학적부에 표시한다. (개정 2018.08.30)

③ 복수전공, 융합전공, 부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학위수여 시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에 대한 학위를 같이 등재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8.08.30)

④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프로그램 이수대상자가 공학교육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한 바를 충족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 (조 신설 2008.09.01) (개정 2010.4.23, 2011.1.26.) (변경 2012.11.13.) (개정 2018.08.30)

제38조의2(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교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양 대학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조 신설 2011.10.4)

제38조의3(학위취소) 학위수여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졸업사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 할 수 있다.(조 신설 2015.06.08.)

제38조의4(명예졸업) ① 본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2.07.]

제10장 시험, 성적, 유급 및 졸업논문

제39조(시험) 매 학기마다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 또는 수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등급으로 표시하고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성적평가에 있어서 평점의 기준은 실점 60점(D)이상 중 적정비율로 분할 등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비율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조 개정 2004.7.26)

제40조의2(출석의무 및 과목낙제 등) ①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모든 학생은 자신의 교과목별 결석회수를 확인하고 결석 한계로 인한 과목낙제에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학생의 출결상황 및 성적 산출근거를 기록하여 학기말에 해당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출석부는 학장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교과목당 결석일수가 그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교과목의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되며 과목 낙제된다.

⑤ 삭제 (1998.3.1.)

⑥ 직계가족 사망, 학기 중 취업 등 부득이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항 신설 2016. 11. 07)

제41조 (성적분류)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실점	등급	평점
95~100	A ⁺	4.5
90~94	A	4.0
85~89	B ⁺	3.5
80~84	B	3.0
75~79	C ⁺	2.5
70~74	C	2.0
65~69	D ⁺	1.5
60~64	D	1.0
50~59	F	0

② 학업성적은 D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하고 F는 낙제로 한다.

제42조(학사경고) 학기당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42조의2 삭제 (2003.3.12)

제43조(유급) ① 유급은 한의과대학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급된다. (개정 2020.09.18.)

1. 예과과정에서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사람(개정 2020.09.18.)

2. 본과과정에서 당해 학기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사람 (개정 2017.05.12., 2020.09.18.)

3. 해당 학기 학업성적 중 계열기초 및 전공필수 1과목 이상의 최종점수가 59점 이하인 사람 (개정 2020.09.18.)

② 학기별로 유급조치하고, 계절학기 수강으로 인정받은 성적은 당해학기 취득학점과 별도 처리하며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삭제 (2003.11.21)

④ 유급자의 결정은 해당 학장이 제출한 유급대상자의 자료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하며, 유급된 당해 학기의 성적은 모두 무효처리 한다.

⑤ 유급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 전에 학생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장에게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43조의2(유급자 휴학)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유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칙 제23조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차기 학기 미등록 휴학 기간내에 자동 휴학 처리하며, 이로 인한 휴학은 학칙 제 23조 제2항의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조 신설 2020.09.18)

제44조(추가시험) ①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추가시험을 치른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개정 2020.07.15)

③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전 소정 기일 내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07.15)

제45조(학점의 취소) 일단 취득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6조(졸업논문 및 시험) 졸업논문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전공(학과)에 따라 졸업논문심사,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발표, 실험·실습보고, 외국어능력시험, 외부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 2002.11.26, 2004.7.26)

제11장 학생의 포상과 징계

(개정 2004.7.26)

제47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장 추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학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징계규정으로 정한다. (변경 2000.2.29) (개정 2004.7.26., 2018.08.30)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2. 삭제 (2000.2.29)

3. 삭제 (2000.2.29)

4. 학교시설, 비품, 도서 등을 파손 또는 절취한 사람 (변경 2000.2.29)

5.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선동한 사람

6. 기타 본교의 제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하기로 결정된 사람

② 총장은 폭력행위나 성관련 비위행위 등의 징계 사유 발생시 가해학생의 휴학, 자퇴 등의 학적변동에 대하여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보류 또는 반려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08.30)

제12장 등록금

제4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 교재비, 기타 실습비는 수업료와 함께 징수한다.

제50조(감면) 모든 등록금은 결석이나 정학으로 인하여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금 등의 반환) ① 등록금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 11. 07., 2018.08.30)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3장 장학금

제52조(장학금)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학비부담 능력이 어려운 학생 중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장학금 급여의 정지)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중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된 경우에는 미급된 장학금을 급여하지 않는다.

제54조(세칙)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7.26.)

제14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변경 2004.12.22)

제55조(위탁생의 수학허가)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장관의 위탁과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원 외에 위탁생으로서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01.23.)

제56조(위탁생의 자격상실)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떠났을 때에는 수학할 수 없다.

제57조(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외국인이 제6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외에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8조(과목이수) 외국인 특별학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59조(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매결연대학의 학생은 각기 교류협정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9.21)

제59조의2(공개강좌)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전수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개강좌세부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04.7.26)

제60조(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학생세부지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조신설 2004.12.22)

제60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내활동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1.10.4)

제15장 조직(변경 2004.7.26)

제1절 총장·부총장

제61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4.7.26) (조 변경 2004.12.22)

제61조의1(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의 호 신설 2004.7.26) (조 변경 2004.12.22)

제2절 교육조직

제61조의2(대학·대학원 등) ① 본교에 한의과대학, 보건의료대학, 미래인재대학, 미디어문화대학, 경상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예술체육대학, FIND칼리지, 미래라이프대학, 글로벌융합대학을 둔다. (변경 2006.9.25.) (개정 2014.12.16., 2017.2.28., 2018.02.12., 2020.02.07., 2021.09.23., 2022.05.26)

②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둔다. (변경 2005.12.26, 2006.9.25, 2007.12.26)

③ 대학·대학원에는 학부, 학과, 전공을 둔다.

(조의 호 신설 2004.7.26) (조 변경 2004.12.22.)

제3절(삭제 2006.11.13)

제61조의3(삭제 2006.11.13)

제4절(삭제 2006.11.13)

제61조의4 (삭제 2006.11.13)

제61조의5 (삭제 2006.11.13)

제61조의7 (삭제 2006.11.13)

제61조의8(직제) 본교의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조의 호 신설 2004.7.26) (조 변경 2004.12.22)

제16장 교수회

제62조(설치)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조 변경 2004.12.22)

제63조(구성) 교수회는 일반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강의전담전임교원, 외국인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04.12.22., 2018.01.23)

제64조(교수회의 소집 및 개최) ① 전체교수회의는 총장이 소집하며 대학별 교수회의는 학장이 소집한다.

② 교수회의는 재직교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회의를 소집한다.

③ 재직교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조 변경 2004.12.22)

제65조 (교수회의 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졸업 및 학업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및 시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조 변경 2004.12.22)

제66조(학장회의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장, 처·실장 또는 학과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조 변경 2004.12.22)

제67조(세칙)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변경 2004.12.22)

제17장 교무위원회

제68조(설치)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조 변경 2004.12.22)

제69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각 처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조 변경 2004.12.22) (조 변경 2010.6.1)

제70조(운영)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학과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수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상벌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대학 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8. 대학원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조 변경 2004.12.22)

제18장 학생활동

제71조(총학생회 설치)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7.26)

② (회원의 자격) 총학생회 회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며 휴학자와 정학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 (총학생회 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예술 및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방재 및 구난 활동
4. 기타 학생자치 활동(조 변경 2004. 12. 22)

제71조의 2(학생회 간부 자격기준) 학생회 간부 자격은 전체학기 성적의 평균 평점 C(2.0)이상, 4학기이상 등록자,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조 변경 2004.12.22)(개정 2017.4.18.)

제72조(학생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조 변경 2004.12.22)

제73조(학생단체의 승인)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 변경 2004.12.22)

제74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회의 운영과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며 10-15인의 지도위원을 둔다.

③ (지도위원회의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회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회 조직 및 회비책정,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조 변경 2004. 12. 22)

제75조(학생활동 제한) 학생은 학내의 학문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조 변경 2004. 12. 22)

제76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배포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조 변경 2004.12.22)

제77조(징계) 이상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학칙에 의거 징계한다.(조 변경 2004.12.22)

제78조(재입학) 학칙에 의거 제적된 사람의 재입학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조 변경 2004.12.22)

제19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79조(남녀차별금지) ① 남녀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남녀차별 및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또는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1.2.23) (개정 2004.12.22., 2018.01.23)

제20장 위탁사업

제80조(위탁사업참여) 본 대학교에서는 학생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 등의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조 신설 2003.9.15) (조 변경 2004.12.22)

제21장 산학협력

제81조(산학협력) ① 본 대학교에서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③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7.26)
(조 신설 2003.9.15) (조 변경 2004.12.22)

제81조의1(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1.23.)
②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2.7.4)

제22장 계약학과(신설 2005.2.15)

제81조의2(설치)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및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의3(정원) ① 계약학과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2.27., 2010.2.4., 2012.2.1., 2013.3.20., 2017.4.25., 2021.09.23)

② 제81조의4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1조의4 제1항 제2호는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3.3.20., 2018.01.23)

제81조의4(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2018.08.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81조의5(납입금)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산업체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변경 2013.3.20)

제81조의6(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제81조의7(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계약학과의 졸업이수 학점은 130으로 하며, 부사관 등 양성과정의 교육이수에 대하여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1조의8(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가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학업이수,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변경 2013.3.20)

제81조의9(기타사항)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학과 학사운영 지침에 따른다.(조 신설 2016. 11. 07)

제23장 자체평가(장 신설 2009.4.15)

제82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9.4.15.)

제24장 사회공헌(장 신설 2018.08.30)

제82조1(사회공헌) ①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봉사과 나눔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한다.

② 사회공헌 지원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08.30]

제25장 보칙(장 신설 2018.08.30)

제83조(학칙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총장이 이를 확정·공포한다. (항신설 및 변경 2014.1.24.) (개정 2019.08.14.)

② 총학생회는 학칙 개정안을 제출 할 수 있다.(신설 2004.7.26) (조 변경 2004.12.22., 2009.4.15.) (항신설 2014.1.24.)

부칙

이 학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75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7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7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학칙 제25조는 1981년도 이전 입학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구 학칙에 의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 및 성적처리등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8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8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학칙은 198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1987년 이전에 입학하였다가 군입대 등으로 휴학한 사람이 복학을 하는 경우 졸업할 년도의 졸업정원이 입학당시의 졸업정원보다 감소된 때에는 입학당시의 졸업정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학과별 졸업정원으로 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대학의 학칙 중 학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 정원이 초과 될 때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다.

- ③ 이 개정 학칙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졸업정원의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까지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사람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의 변경 학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 ② (학과개편으로 인한 교육과 복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985학년도까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과학교육과에 입학하여 휴학자로서 입학 당시의 교육과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조의 변경학칙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학과소속으로 할 수 있다.
- ③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학칙은 198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학칙은 199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학사 제적은 종전에 받은 학사경고 또는 성적에 불구하고 1991학년도 제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한약재료학과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 폐과 이전 한약재료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은 동학과를 졸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과할 수 있다. 다만, 한의예과로의 전과는 제1학년으로 하되 인원 및 시험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재학년한에 대한 경과조치) 한약재료학과에 재적중이었던 사람이 폐과 후 전과할 경우의 재학년한은 전과 후에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7조, 제48조, 제77조,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한의예과, 한의학과 학생 유급 구제에 관한 특례조치) 1993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한의예과, 한의학과에 대하여는 학칙 제43조 1에 의한 유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별로 유급 조치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한의예과, 한의학과 학생유급 구제에 관한 특례조치) 1995학년도 제2학기에 한하여 학칙 43조에 의한 유급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별로 유급 조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수강 및 학기중 재수강으로 인정받은 성적은 당해년도 취득학점과 재수강과목을 별도 처리하며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사제적에 대한 경과조치) 학사제적은 종전에 받은 학사경고에도 불구하고 1993학년도 제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 ③ (환경학과를 환경공학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94학년도까지 환경학과에 입학하여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38조에 의하여 환경학과로 한다.
- ④ (재입학에 대한 경과조치)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군입대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미등락, 미복학, 성적불량 등으로 1996년 2월말 이전에 자퇴 또는 제적당한 사람의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4년간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온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9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당시 무역학과, 통계학과, 생활미술과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국제통상학과, 응용통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7조 2항, 제38조 1항은 1998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7조는 1999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 ③ 제38조는 1999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하되,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④ (전산학과를 전자계산공학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98학년도 이전까지 전산학과로 입학하여 휴학한 후 전자계산공학과로 복학한 사람의 편제 및 교육과정 적용은 전자계산공학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학칙 제38조에 의거 졸업학위는 이학사로 한다.
- ⑤ 제42조의 2는 1999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며, 적용전 이미 2, 3회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통산 4회를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학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8조 제1항 컴퓨터전자물리학과, 생명과학과는 2000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학칙은 2000년 4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2000. 8.23.)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제38조 제1항 관광경영학전공 졸업대상자 중 2000학년도 후기 졸업생까지는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③ (1999학년도 이공과대학 공학군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할 때 경과조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컴퓨터정보공학부로 1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 ④ (2001학년도 전자계산공학부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이공과대학 전산학과, 전자계산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03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4학년도 이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⑤ (1999학년도 예술체육대학 조형학군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1학년에 복학할 때 경과 조치) 본인의 의사에 따라(공예학과, 산업디자인학과)로 1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 ⑥ (2001학년도 체육학부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전에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03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4학년도 이후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체육학부 체육학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이 변경학칙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8월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학생의 정원)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졸업과 학위)는 2002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② (2001학년도 이전에 어문학군, 사회학군, 생활과학군으로 입학한 자가 휴학 후 2002학년도 이후 1학년으로 복학 할 때 경과조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전공을 배정한다.
 - 1. 인문사회과학대학 어문학군 - 국어국문학과, 영미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 2.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학군 - 사회복지학과, 중국학과
 - 3. 이공과대학 생활과학군 - 생활과학산업학과, 식품영양학과

- ③ (2001학년도 이전 공학군(야)로 입학한 자가 2002학년도 이후 1학년으로 복학할 때 경과조치) 제1전공은 기 학과로 입학한 학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타 학과를 원할 시 신입생과 동일하게 제1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2002학년도 전공(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영미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주), 영어학전공(야)는 2002학년도 1학년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2005학년도에는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2.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식물과학부의 식량원예과학전공 재적생은 2002학년도 이후부터 응용식물과학부의 환경식물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2001학년도 이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의 정보전자공학전공, 컴퓨터시스템공학전공(야)는 2002학년도부터 이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의 정보통신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야)으로 본다.
 4. 이공과대학 생활과학산업학과의 편제 및 졸업학위는 2002학년도 1학년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2005학년도에는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⑤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전 편제의 전공(학과), 학부(군)으로 입학한 자가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학생의 정원)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2002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② {2003학년도부터 경상대학 경상학부 세무정보학전공(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과 됨에 따라 세무정보학전공(야)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타학과의 야간학과로 전과한다.
- ③ {2002학년도 이전에 법정학군(주,야), 경상학부(주,야), 경제통상학부(주,야), 응용식물과학부, 응용동물과학부, 공학군(주,야)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2003학년도 이후 1학년으로 복학 할 때 경과조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전공을 배정한다.
1. 인문사회과학대학 “법정학군(주,야)”는 “법학과(주,야)”나 “행정학과(주,야)”로
 2. 경상대학 “경상학부(주,야)”는 “경영학과(주,야)”나 “회계정보학과(주,야)”로
 3.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주,야)”는 “경제학과(주,야)”나 “국제통상학과(주,야)”로
 4.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식물과학부”는 “환경식물공학과”나 “산림과학과”나 “자원식물학과”
 5.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동물과학부”는 “동물자원학과”나 “생명공학과”나 “생명산업학과”로
 6. 이공과대학 “공학군(주,야)”는 “자원공학과(주,야)”나 “환경공학과(주,야)”나 “건설시스템공학과(주,야)”나 “산업경영공학부(주,야)”로
- ④ {2003학년도 전공(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군)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된 다음의 학과(전공)는 2003학년도 재적생부터 전환된 학과로 본다.
 - 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정학군 행정학과(주,야)”는 “행정학과(주,야)”로
 - 나. 인문사회과학대학 “법정학군 법학과(주,야)”는 “법학과(주,야)”로
 - 다. 경상대학 “경상학부 경영학전공(주,야)”는 “경영학과(주,야)”로
 - 라. 경상대학 “경상학부 회계정보학전공(주,야)”는 “회계정보학과(주,야)”로
 - 마.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주,야)”는 “경제학과(주,야)”로
 - 바.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주,야)”는 “국제통상학과(주,야)”로
 - 사.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식물과학부 환경식물공학전공”은 “환경식물공학과”로
 - 아.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식물과학부 산림과학전공”은 “산림과학과”로
 - 자.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식물과학부 자원식물학전공”은 “자원식물학과”로
 - 차.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동물과학부 동물자원학전공”은 “동물자원학과”로

- 카.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동물과학부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로
 타.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동물과학부 영양자원학전공”은 “생명산업학과”로
 파. 이공과대학 “공학군 자원공학과”는 “자원공학과”로
 하. 이공과대학 “공학군 토목공학과(주,야)”는 “건설시스템공학과(주,야)”로
 거. 이공과대학 “공학군 환경공학과”는 “환경공학과”로
2. 예술체육대학 공예학부 공예학전공 및 이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공학전공(주,야), 테크노경영공학전공(야)은 2003학년도 1학년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2006학년도에는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3. 공학군 산업공학과(주,야) 2003학년도 재적생은 산업공학과(주,야)로 적용하고, 2006학년도에는 전체 재적생에게 산업경영공학부의 산업공학전공(주,야), 테크노경영공학전공(야)로 적용한다.
 4. 2002학년도 이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의 정보통신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야)는 2003학년도부터 이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의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전공(야)으로 본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81400-731, 2003.9.15)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산학관연구협력센터”는 제80조의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의 법인설립인가와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기획81400-955, 2003.11.21)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별표2는 200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②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2004학년도부터 이공과대학 자연과학군 응용통계학과(야간), 식품영양학과(야간)가 폐과됨에 따라 자연과학군 응용통계학과(야간), 식품영양학과(야간) 재적생은 동학과를 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군(주간, 야간)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2004학년도 이후 1학년으로 복학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컴퓨터전자물리학과”, “화학학과”, “생명과학과”, “응용통계학과”로 제1전공을 배정한다.
- ④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04학년도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학군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된 다음 각 목의 학과는 2004학년도 재적생부터 전환된 학과로 본다.
 - 가. 이공과대학 “자연과학군 컴퓨터전자물리학과”는 “컴퓨터전자물리학과”로
 - 나. 이공과대학 “자연과학군 화학과”는 “화학과”로
 - 다. 이공과대학 “자연과학군 생명과학과”는 “생명과학과”로
 - 라. 이공과대학 “자연과학군 응용통계학과(주간, 야간)”는 “응용통계학과(주간, 야간)”로
 2. 2003학년도에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야간)로 입학한 학생은 체육학부(야간) 생활체육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⑤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편제의 전공(학과) 학부(군)으로 입학한 자가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 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과-111, 2004.2.16)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3월12일 학칙 제42조의2(학사제적) 폐지 이

전에 성적불량으로 학사제적 된 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의거 재입학 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과-288, 2004.4.14)

이 변경학칙은 200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학생의 정원)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55, 2004.7.23)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별표2는 2004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2005학년도 이후에 복학할 때 경과조치)
 1. 다음 각목의 학과1학년 재적생은 통합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 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는 “법학부”로
 - 나.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는 “행정학부”로
 - 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원식물학과, 동물자원학과, 생명공학과”는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로
 2. 변경된 학부제로 복학을 하며, 제1전공은 기 입학한 학과(전공)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타 전공을 원할 시 신입생과 동일하게 제1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가.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는 “법학부 법학전공”으로
 - 나.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는 “행정학부 행정학전공”으로
 - 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원식물학과”는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공”으로
 - 라. 생명자원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는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바이오비즈니스학전공”으로
 - 마.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과”는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생명공학전공”으로
- ③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산업학과”는 2005학년도 전체 재적생에게 “바이오산업공학과”를 적용한다.
 2. 다음의 학과는 2005학년도 1학년 재적생부터 적용하고, 2008학년도에는 전체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가. 이공과대학 “화학과”는 “정밀화학신소재학과”로
 - 나. 이공과대학 “응용통계학과”는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로
 - 다. 이공과대학 “산업공학과”는 “시스템경영공학과”로
- ④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 편제의 학부(군) 전공(학과)으로 입학한 학생이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 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과-937, 2004.11.2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부터 이공과대학 산업공학과(야)가 폐과됨에 따라 산업공학과(야) 재적생은 동학과를 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편제의 전공(학과) 학부(군)으로 입학한 사람이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 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과-1033, 2004.12.22)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9, 2005.1.24)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50, 2005.2.15)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25, 2005.3.8)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97, 2005.4.19)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87, 2005.5.31)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36, 2005.6.8)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07, 2005.6.28)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53, 2005.7.21)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15, 2005.8.30)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38, 2005.9.6)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24, 2005.10.5)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70, 2005.11.14)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365, 2005.12.12)

① 이 변경학칙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2006학년도 이후에 복학 할 때 경과조치) 다음 각목의 학과 1학년 재적생은 통합된 학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1. 인문사회과학대학 "방송영상문화학과"는 "언론광고학부"로
2. 생명자원과학대학 "환경식물공학과", "자원식물학과"는 "친환경식물학부"로
3. 생명자원과학대학 "동물자원학과", "생명공학과", "바이오산업공학과"는 "동물생명자원학부"로
4. 이공과대학 "컴퓨터전자물리학과"는 "응용과학군 응용물리전자학과"로
5. 이공과대학 "정밀화학신소재학과"는 "응용과학군 정밀화학신소재학과"로
6. 예술체육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으로
7.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야) 태권도학전공"은 "체육학부(야) 태권도경영학전공"으로

③ [2006학년도 학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는 2006학년도 재적생부터 "무역학과"로 본다
2.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야) 태권도경영학전공"은 2006학년도부터 적용하고 2009학년도에는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④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2006학년도부터 이공과대학 "시스템경영공학과"가 폐과됨에 따라 재적생은 동학과를 졸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타학과로 전과한다.

⑤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편제의 전공(학과) 학부(군)으로 입학한 자가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과-1412, 2005.12.26)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1, 2006.1.23)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52, 2006.2.13)

①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생명자원과학대학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에 재적중인 재적생은 다음의 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1.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환경생물자원학전공"은 "자원식물학과"로
2.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바이오비즈니스전공"은 "동물자원학과"로
3. "환경바이오시스템학부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로

부칙 (기획예산과-502, 2006.5.22)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25, 2006.8.8)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884, 2006.9.25)

① (시행일)이 변경 학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후 2007학년도 이후에 복학 할 때 경과조치)다음 각 목의 1학년 재적생은 통합(변경)된 학군(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1. 이공과대학 "자원공학과"는 "건설공학군 자원공학과"로
2. 이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는 "건설공학군 건설시스템공학과"로
3. 예술체육대학 "공예학부 공예학전공"은 "생활조형디자인학과"로

③ (2007학년도 소속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다음 각목의 재적생은 2007학년도부터 변경된 소속으로 적용한다.

1. "이공과대학 한방의료공학과"는 "보건과학대학 한방의료공학과"로
2. "한의과대학 간호학과"는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로

④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전 편제의 전공(학과) 학부(군)으로 입학한 자가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과-1063, 2006.11.13)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329, 2007.3.26, 기획예산과-396, 2007.4.10)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이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재적중인 재적생은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16, 2007.7.2)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26, 2007.10.2)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13, 2007.11.19)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부터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부(야) 및 행정학부(야)과 경상대학 경제학과(야) 및 무역학과(야)가 폐과됨에 따라 재적생은 동 학부(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타 학부(과)로 전과를 허락하고 전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부터 동물생명자원학부 내 식품가공유통학전공이 폐지됨에 따라 2007학년도 동물생명자원학부 재적생은 3학년에 진급하는 2008학년도부터 동물자원학전공과 생명공학전공의 2개 전공만 배정한다. 단, 2006학년도 이전에 생명산업학과 또는 바이오산업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2007학년도 2학기부터 복학할 경우 3학년 2학기 이상으로 복학 시 소속을 바이오산업공학과로 하고, 3학년 1학기 이하로 복학하는 경우 동물자원학전공이나 생명공학전공으로 배정하되 해당 학생이 전과를 원하는 경우 전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학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관광학부(야) 및 컴퓨터정보공학부의 명칭변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관광학부 관광학전공(야)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관광학부 호텔컨벤션학전공(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학년도를 기준으로 1, 2학년 재적생은 2008학년도부터 호텔컨벤션학전공(야)으로 변경한다.
 2. 컴퓨터정보공학부는 2008학년도부터 IT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7학년도 이전에 컴퓨터정보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이 2008학년도 입학생의 재학 학년 이하로 복학할 경우 소속을 IT공학부로 변경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431, 2007.12.27)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05, 2008.5.15)

- ① (시행일) 변경 학칙은 2008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8학년도 전기졸업자(2009년 2월 졸업자)부터 해당 학위종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59, 2008.6.24)

변경 학칙은 2008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965, 2008.9.8)

- ①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09학년도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공학군 신에너지·자원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부, 체육학부 태권도학전공(야)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복학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에는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③ (공학교육인증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제38조에 따른 공학사 학위는 이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와 환경공학과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보건과학대학 한방의료공학과는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21, 2008.11.12)

변경 학칙은 2008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68, 2009.2.27)

변경 학칙은 2009년 0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470, 2009.4.15)

변경 학칙은 2009년 0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86, 2009.11.2)

- ① 변경 학칙은 2009년 10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②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부터 영미어문학부 영어학전공(야)의 폐과에 따라 재적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되, 관련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392, 2009.11.27)

- ① 변경 학칙은 2009년 11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학칙 제81조의7 제1항에 대한 경영학과(야), 법률행정학과(야)의 졸업이수학점 130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88, 2010.2.10)

변경 학칙은 2010년 02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556, 2010.4.23)

변경 학칙은 2010년 0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95, 2010.6.3)

변경 학칙은 2010년 06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94, 2010.9.29)

- ① 변경 학칙은 2010년 09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② (2011학년도 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디자인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은 2011학년도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14, 2010.10.28)

- ① (시행일)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 ② (130학점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1. 130학점 적용은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 변동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학칙 제81조의 7 1항에 대하여 창업경영학과(야)의 졸업이수학점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130학점을 적용한다.
 3.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8, 2011.1.26)

변경 학칙은 2011년 0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67, 2011.5.25)

변경 학칙은 2011년 05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126, 2011.10.4)

- ① (시행일) 변경 학칙은 2011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2학년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회계정보학과는 “회계학과”를 2012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③ (2012학년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을 2012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 ④ (2012학년도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관광학부는 관광경영학전공, 관광개발학전공, 호텔컨벤션학전공을 2012학년도부터 신입생에게 적용하고 2013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전공별로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55, 2012.2.1)

변경 학칙은 2012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28, 2012.7.4)

변경 학칙은 2012년 07월 0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596, 2012.11.13)

변경 학칙은 2012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7, 2013.3.20)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학과 폐파에 따른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 재적생은 해당 계약 학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의거하여 전과를 허락 할 수 있다.
- ③ (계약학과 납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81조의5(납입금)의 산업체의 부담금은 2013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④ (간호학과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간호학과 졸업이수 학점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는 해당 학생의 입학기준 년도의 졸업이수학 점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63, 2013.5.9)

변경 학칙은 2013년 05월 0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81, 2013.11.12)

변경 학칙은 2013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0, 2014.1.24)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특별학점인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1조의5(특별학점인정)가 폐지됨에 따라 조건을 갖춘 재학생은 2014학년도 매학기 별도기간까지, 휴학생은 복학 학기 별도기간에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특별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부-389, 2014.05.22)

변경 학칙은 2014년 0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89, 2014.12.16)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8조 대학특성화기초 과목이수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 (임상병리학과 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임상병리학과 졸업이수 학점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는 해당학생의 입학기준 년도의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03, 2015.01.30)

- ①(시행일) 이 변경된 학칙의 경과조치는 2015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파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부터 인문사회과학대학 법률행정학과(야간), 경상대학 국제비즈니스학과(야간), 이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야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야간) 태권도 학전공이 폐지됨에 따라 재적생에 대하여 동 학부(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과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과를 시행한다.
- ③ (모집단위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인문사회과학대학 법부동산학부 법학전공(구 법학부 법학전공), 법부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구 법학부 부동산법무전공) 명칭변경과 모집단위 변경은 2015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2. 이공과대학 신에너지·자원공학과(구 건설공학군 신에너지·자원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구 건설공학군 건설시스템공학과)의 명칭변경은 2015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5, 2015.06.08)

변경 학칙은 2015년 06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79, 2016.05.13)

변경 학칙은 2016년 0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89, 2016.11.07)

변경 학칙은 2016년 11월 0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72, 2017.03.02)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명칭 및 소속변경은 2017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2. 인문사회과학대학 영미어문학부, 영미어문학부 영어교수법전공, 법부동산학부 법학전공, 행정학부, 행정학부 행정학전공의 재적생은 2019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20학년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실용영어학과, 법학과, 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3. 경상대학 관광학부(야) 호텔컨벤션학전공 명칭변경은 2017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4. 생명자원과학대학 명칭변경은 2017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5. 이공과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명칭변경은 2017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단, 컴퓨터정보공학부 재적생 중 2016학년도 1학년 재학생은 1학년말에 제1전공을 배정하도록 하며 2017학년도 이후 복학 및 재입학하는 컴퓨터정보공학부 재적생은 본인이 컴퓨터공학과 또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선택하도록 한다.

③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1. 2017학년도부터 인문사회과학대학 영미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법부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 행정학부 전자정부학전공, 경상대학 관광학부 관광개발학전공, 생명자원과학대학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이공과대학 생명과학과, 생활과학산업학과는 폐과에 따라 재적생에 대하여 동 학부(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과 관련 규정 및 지침(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제외)에 따라 전과를 시행한다.

④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전 편제의 학부(학과), 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 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복수전공하는 자는 변경된 편제의 학과, 전공을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부-166, 2017.04.20)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1조의2는 2017학년도 학생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76, 2017.04.27)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하되, 계약학과의 변경된 입학정원표는 2017학년도 개시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92, 2017.05.12)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284, 2017.06.29)

이 변경 학칙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1, 2018.01.23)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5, 2018.02.1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단위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어문학과는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 2018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② 인문사회과학대학 영미어문학부, 영미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영미어문학부 영어교수법전공, 실용영어학과의 재적생은 2019학년도까지 동 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20학년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영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인문사회과학대학 언론광고학부, 언론광고학부 언론영상전공, 언론광고학부 광고홍보전공의 소속변경은 2018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④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의 소속 및 명칭변경은 2018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⑤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재적생은 2018학년도까지 동 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8학년도 1학년 재학생은 1학년말에 이 개정 학칙에 의해 각각 동물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를 배정하도록 하며, 2019학년도 이후 복학 및 재입학하는 생명공학부 재적생은 본인이 동물생명공학과 또는 생명과학과를 선택하도록 한다.

⑥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의 소속 변경은 2018학년도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부터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합기도학전공은 모집단위 폐지에 따라 재적생에 대하여 동 학부(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칙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대학, 생활조형디자인학과,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로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2018학년도부터 FTA국제학부, FTA국제학부 국제경영전공, FTA국제학부 국제금융전공, FTA국제학부 국제물류전공은 경상대학으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

③ FTA국제학부, FTA국제학부 국제경영전공, FTA국제학부 국제금융전공, FTA국제학부 국제물류전공 모집단위 폐지 및 소속 변경에 따라 재적생에 대하여 경상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동 학부(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칙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대학, 예술체육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로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전과를 허가하는 경우 학칙 제20조에도 불구하고 2,3학년 매 학기 초에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전 편제의 학부(학과), 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 시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복수전공(부전공)하는 자는 변경된 편제의 학과, 전공을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예산부-455, 2018.08.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 기획예산부-85호(2018.02.12.)의 제3조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9학년도부터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합기도학전공은 모집단위 폐지에 따라 재적생에 대하여 동 학부(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 학칙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로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2. 2018학년도부터 FTA국제학부, FTA국제학부 국제경영전공, FTA국제학부 국제금융전공, FTA국제학부 국제물류전공은 경상대학교로 그 소속을 변경한다.
3. FTA국제학부, FTA국제학부 국제경영전공, FTA국제학부 국제금융전공, FTA국제학부 국제물류전공 모집단위 폐지 및 소속 변경에 따라 재적생에 대하여 경상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동 학부(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칙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로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전과를 허가하는 경우 학칙 제20조에도 불구하고 2,3학년 매 학기 초에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예술체육대학으로의 전과는 2019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기획예산팀-167, 2019.0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상지영서대학교와의 통폐합에 따른 상지영서대학교 학칙 준치기간,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통폐합 후 단과대학 신설 및 명칭변경, 학과 신설 및 명칭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는 따로 정한다.

부칙(기획예산팀-417, 2019.08.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간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2월 28일(3년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상지영서대학교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존치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지대학교나 다른 대학으로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특례편입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상지영서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상지영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 중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상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로 편입학한 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하여 본교 유아교육학과 학생과 동등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산업체위탁 또는 전공심화과정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상지영서대학교 산업체위탁생 또는 전공심화과정 학생으로서 존치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 또는 전공심화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지대학교의 동일·유사 학부의 전공 또는 학과에 정원의 편입학할 수 있다.

제5조(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명칭변경으로 다음의 단과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2020학년도부터 변경된 단과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 ① “생명과학대학”은 “생명환경과학대학”으로
- ② “이공과대학”은 “융합기술공과대학”으로
- ③ “보건과학대학”은 “보건의료과학대학”으로

제6조(모집단위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 및 학과명칭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2020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경상대학 관광경영학전공”은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로
2. “경상대학 관광개발학전공”은 “경상대학 관광여가기획학과”로
3. “경상대학 호텔컨벤션학전공”은 “경상대학 호텔컨벤션학과”로
4. “생명과학대학 친환경식물학부 유기농생태학전공”은 “생명환경과학대학 식물생명자원학과”로
5. “생명과학대학 친환경식물학부 원예조경학전공”은 “생명환경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로
6. “이공과대학 생명과학과”는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과학과”로
7. “이공과대학 응용과학군 응용물리전자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응용물리전자학과”로
8. “이공과대학 응용과학군 정밀화학신소재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정밀화학신소재학과”로
9. “이공과대학 신에너지·자원공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신에너지·자원공학과”로
10. “이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스마트건설공학과”로
11. “이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로

②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의 재적생은 2022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23학년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찰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경상대학 경영학과(야)”의 재적생은 2022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23학년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경상대학 글로벌경영학과(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④ “생명과학대학 친환경식물학부”의 2019학년도 1학년 재학생은 1학년말에 각각 “생명환경과학대학 식물생명자원학과” 또는 “생명환경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로 배정하도록 한다.

제7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0학년도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야), 경상대학 호텔관광경영학전공(야)의 모집단위 폐지에 따라 해당 학과 재적생에 대하여 동 학과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학칙 제2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유아교육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로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전과를 허가하는 경우 학칙 제20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2~3학년 매 학기 초에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년 이전 편제의 학부(학과),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2020년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경우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하고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도 변경된 편제의 학과, 전공을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팀-593, 2019.12.02.)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83, 2020.02.0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편제) 및 제61조의2(대학·대학원등)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인문사회과학대학 법무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의 재적생은 2022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23학년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인문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에 관한 경과조치)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간의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상지영서대학교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2월 28일(3년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상지영서대학교에 입학한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지영서대학교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존치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못할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지대학교로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상지대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부칙(기획예산팀-257, 2020.04.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학생의 정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07.15.)

[본조 신설 2020.07.15]

제2조(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2021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1. “경상대학 관광여가기획학과”는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로
2. “경상대학 호텔컨벤션학과”는 “경상대학 호텔컨벤션경영학과”로
3. “융합기술공과대학 응용물리전자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반도체물리전자학과”로
4. “융합기술공과대학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IT통계학과”로
5. “융합기술공과대학 스마트건설공학과”는 “융합기술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로

②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부”의 재적생은 2023년까지 동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24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인문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07.15]

제3조(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전 편제의 학부(학과),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변경된 편제의 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복수전공(부전공) 하는 학생은 변경된 편제의 학과, 전공을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07.15]

부칙(기획예산팀-453, 2020.07.15)

이 변경 학칙은 2020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514, 2020.08.13)

이 변경 학칙은 2020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604, 2020.09.18)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유급) 제1항의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258, 2021.04.28.)

이 학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293, 2021.05.12.)

이 학칙은 2021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513, 2021.09.23.)

제1조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단과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명칭변경으로 다음의 단과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단과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①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문학과, 영어학과, 중국학과, 문화콘텐츠학과”는 “글로벌문화융합대학”으로
- ②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유아교육학과, 경찰법학과, 행정학

- 과, 부동산학과, 아시아국제관계학과, 군사학과, 법률행정학과(야)”는 “미래인재대학”으로
- ③ “생명환경과학대학”은 “생명환경융합대학”으로
- ④ “융합기술공과대학”은 “디지털융합공과대학”으로
- ⑤ “융합기술공과대학 정밀화학신소재학과”는 “보건의료과학대학 정밀화학신소재학과”로
- ⑥ “예술체육대학 패션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글로벌문화융합대학”으로
- ⑦ “교양대학”은 “세종창의교양대학”으로

제3조(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 변경으로 다음 각호의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해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문학과”는 “글로벌문화융합대학 한국어문화학과”로
 2.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는 “미래인재대학 공공행정학과”로
 3.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는 “경상대학 융합관광기획학과”로
 4. “경상대학 항공서비스학과”는 “경상대학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로
 5. “생명환경과학대학 식물생명자원학과”는 “생명환경융합대학 스마트팜학과”로
 6. “융합기술공과대학 IT통계학과”는 “디지털융합공과대학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로
 7. “보건의료과학대학 한방의료공학과”는 “보건의료과학대학 디지털헬스케어학과”로
 8. “보건의료과학대학 의료경영학과”는 “보건의료과학대학 보건의료경영학과”로
- ② 모집단위 및 학과 명칭변경으로 다음 각호의 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이 학칙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까지 기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25학년도 이후 재적하는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한 학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1. “중국학과” 재적생은 “중국문화산업학과”로
2. “패션디자인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재적생은 “패션뷰티학부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뷰티학부 뷰티화장품전공”으로
3. “부동산학과” 재적생은 “도시계획부동산학과”로
4. “아시아국제관계학과”, “군사학과” 재적생은 “국가안보학부 국제관계학전공”, “국가안보학부 군사학전공”으로
5. “경제학과”, “경영정보학과” 재적생은 “경영경제데이터산업학부 금융경제데이터분석전공”, “경영경제데이터산업학부 IT경영데이터분석전공”으로
6. “무역학과”, “회계학과” 재적생은 “비즈니스융합학부 무역·물류전공”, “비즈니스융합학부 기업회계전공”으로
7. “산림과학과”, “환경조경학과” 재적생은 “산림조경학부 산림과학전공”, “산림조경학부 환경조경학전공”으로
8. “동물자원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재적생은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으로
9. “정밀화학신소재학과”, “제약공학과” 재적생은 “제약바이오학과”로
10. “환경공학과”, “반도체물리전자학과” 재적생은 “지구환경공학과”, “반도체·에너지공학과”로
11. “전자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재적생은 “전자·보안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자·보안공학부 사이버보안공학전공”으로
12. “로봇공학과”,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재적생은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으로
13. “재활상담학과” 재적생은 “놀이심리치료학과”로
14. “언어치료학과” 재적생은 “언어청각치료학과”로
15. “신에너지·자원공학과” 재적생은 “지구환경공학과” 또는 “반도체·에너지공학과”를 선택하도록 한다.

제4조(편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전 편제의 학부(학과) 및 전공으로 입학한 자가 변경된 편제의 학부(학과) 및 전공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적용한다.

② 복수전공(부전공)하는 자는 변경된 편제의 (학부)학과 및 전공을 적용한다. 다만, 이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기획예산팀-135, 2022.02.28.)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14, 2022.05.26.)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학생의 정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변경 2012.11.13, 2013.11.12, 2014.05.22, 2015.06.08., 2016.05.13., 2017.06.27., 2018.01.23., 2018.02.12., 2018.08.30., 2019.03.21., 2019.08.14., 2020.04.10., 2021.04.28., 2022.02.28., [2022.05.26](#))

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3)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3
한 의과대학	자연과학	한 의예과	60
	의학	한 의학과	-
보건의료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60
		물리치료학과	30
		보건계열 제약바이오전공 보건의료경영전공 식품영양학전공 놀이심리치료전공 언어청각치료전공	100
		임상병리학과	30
		작업치료학과	30
미래인재대학	인문사회	경찰법학과	50
		공공인재학과	50
		군사학과	5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50
		사회복지학과	60
		유아교육학과	38
	공학	건설환경공학과	50
		소방안전학과	50
미디어문화대학	인문사회	문화콘텐츠학과	50
		미디어영상광고학과	50
	예체능	만화애니메이션학과	50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3
경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60
		국제경영학과	50
		호텔항공관광경영학과	50
생명환경과학대학	자연과학	동물자원학과	50
		스마트생명과학과	50
		조경산림학과	50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공학	전기전자융합공학과	50
		컴퓨터공학과	50
예술체육대학	예체능	가구패션디자인학과	50
		산업디자인학과	50
		시각영상디자인학과	50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80
		생활체육학전공(야)	50
태권도학전공	60		
FIND칼리지	인문사회	자유전공학부	80
미래라이프대학	인문사회	평생교육융합계열	50
		사회적경제학과	
		평생교육상담학과	
		레저레크레이션학과	
		식음료외식산업학과	
글로벌융합대학	인문사회	한국어교육학과	20
합계			1,758

모집단위별 입학정원(2020~2022)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2	2021	2020
글로벌문화 융합대학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28	28
		한국어문화학과	28		
		영어학과	30	35	35
		중국학과		45	45
		중국문화산업학과	30		
		문화콘텐츠학과	30	30	30
	예체능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0		
		패션뷰티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뷰티화장품전공	60		
미래인재대학	인문사회	경찰법학과	40	40	40
		행정학과		35	35
		공공행정학과	30		
		부동산학과		30	3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0		
		사회복지학과	50	55	50
		미디어영상광고학부			54
		미디어영상광고학과	50	50	
		유아교육학과	38	38	38
		군사학과		30	30
		아시아국제관계학과		30	30
		국가안보학부 군사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60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2	2021	2020
경상대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60	70	70
		글로벌경영학과(야)	20	20	20
		경제학과		35	35
		경영정보학과		30	38
		경영경제데이터산업학부 금융경제데이터분석전공 IT경영데이터분석전공	60		
		무역학과		45	50
		회계학과		43	40
		비즈니스융합학부 기업회계전공 무역·물류전공	60		
		관광경영학과	30	40	40
		관광여가기획학과			30
		관광개발학과		30	
		융합관광기획학과	30		
		호텔컨벤션학과			45
		호텔컨벤션경영학과	30	45	
		항공서비스학과		30	30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30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2	2021	2020
생명환경 융합대학	자연과학	산림과학과		35	35
		환경조경학과		30	30
		산림조경학부 산림과학전공 환경조경학전공	60		
		식물생명자원학과		25	25
		스마트팜학과	30		
		동물생명공학과		35	35
		동물자원학과		45	40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동물자원학전공	65		
		생명과학과	30	35	35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2	2021	2020
디지털융합 공과대학	자연과학	응용물리전자학과			33
		반도체물리전자학과		30	
		정밀화학신소재학과		30	30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			30
		IT통계학과		30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30		
	공학	신에너지·자원공학과		25	25
		반도체·에너지공학과	30		
		환경공학과		30	30
		지구환경공학과	30		
		스마트건설공학과			50
		건설시스템공학과	40	50	
		컴퓨터공학과	40	54	49
		소방공학과	30	30	30
		전자공학과		30	30
		정보보안학과		30	30
		전자·보안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사이버보안공학전공	60		
		로봇공학과		30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44	44
		스마트자동차공학과		30	30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인공지능전공 지능형로봇전공 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자동차전공	35 30 30 30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2	2021	2020
보건의료 과학대학	인문사회	의료경영학과		40	43
	자연과학	간호학과	60	50	50
		물리치료학과	30	30	30
		임상병리학과	30	30	30
		작업치료학과	30	30	30
		제약공학과		35	38
		재활상담학과		30	30
		언어치료학과		30	30
		보건융합계열	150		
	인문사회	제약바이오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40	40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놀이심리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공학	한방의료공학과		30	30	
	디지털헬스케어학과	30			
한의과대학	자연과학	한의예과	60	60	60
	의학	한의학과	-	-	-
예술 체육대학	예체능	생활조형디자인학과	35	32	40
		산업디자인학과	35	30	30
		시각영상디자인학과	35	35	38
		패션디자인학과		30	30
		뷰티디자인학과		30	30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0	30
		체육학부			
		체육학전공	60	50	58
		생활체육학전공(야)	35	31	31
		태권도학전공	52	50	53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년도		
			2022	2021	2020
세종창의 교양대학	인문사회	자유전공학부	30	30	30
평생교육 융합대학	인문사회	사회적경제학과		10	10
		생애개발상담학과		10	10
		평생교육융합계열 사회적경제학과 생애개발상담학과 레저레크레이션학과 식음료외식산업학과	50		
		합계			
		첨단학과 포함	2,118	2,255	2,255
		첨단학과 제외	2,028		

<첨단학과 정원>

모집단위		2022		비고
		입학정원	첨단학과 배정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30	10	편입학 여석 활용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인공지능전공	35	35	
	지능형로봇전공	30	10	
스마트팜학과		30	15	
디지털헬스케어학과		30	20	
계		155	90	

(별표1-1) (개정 2013.3.20., 2017.4.25., 2021.09.23)

계약학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표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정원	개설전공(학과)	기준인원	비고
미래인재대학	법률행정학과(야)	20	법률행정학과(야)	20	편입학

(별표2) (개정 2012.11.13., 2017.2.28., 2018.02.12., 2018.08.30., 2019.08.14., 2021.04.30., 2021.09.23)

학 위 중 별 표

학 위 명	대 학	전 공 (학 과)
문 학 사	글로벌문화융합대학	한국어문학과, 영어학과, 중국학과, 문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중국문화산업학과
	미래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생애개발상담학과, 레저레크레이션학과, 식음료외식산업학과
행 정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행정학과, 공공행정학과
법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법학과, 경찰법학과
법 률 행 정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법률행정학과
부 동 산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부동산학과
도 시 계 획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미 디 어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언론영상전공, 광고홍보전공
국 제 관 계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아시아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전공
유 아 교 육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유아교육학과
군 사 학 사	미 래 인 재 대 학	군사학과, 군사학전공
경 영 학 사	경 상 대 학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국제경영전공, 글로벌경영학과, IT경영데이터분석전공, 무역·물류전공
회 계 학 사	경 상 대 학	회계학과, 기업회계전공
무 역 학 사	경 상 대 학	무역학과
관 광 경 영 학 사	경 상 대 학	관광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호텔컨벤션학과,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항공서비스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관 광 학 사	경 상 대 학	관광개발학과, 관광여가기획학과, 융합관광기획학과
경 제 학 사	경 상 대 학	경제학과, 금융경제데이터분석전공
생 명 과 학 사	생명환경융합대학	산림과학과, 식물생명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동물생명공학과, 스마트팜학과, 동물자원학전공
동 물 생 명 공 학 사	생명환경융합대학	동물생명공학전공
산 림 조 경 학 사	생명환경융합대학	산림과학전공
조 경 학 사	생명환경융합대학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학전공
이 학 사	생명환경융합대학	생명과학과
	디지털융합공과대학	응용물리전자학과,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 생활과학산업학과, 반도체물리전자학과, IT통계학과,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보건의료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제약공학과, 정밀화학신소재학과, 제어바이오학과
공 학 사	디지털융합공과대학	신에너지·자원공학과, 스마트건설공학과, 환경공학과,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소방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보안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로봇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사이버보안공학전공, 인공지능전공, 지능형로봇전공, 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자동차전공, 지구환경공학과, 반도체·에너지공학과
	보건의료과학대학	한방의료공학과, 디지털헬스케어학과
미 술 학 사	예 술 체 육 대 학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디 자 인 학 사	글로벌문화융합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미 용 학 사	글로벌문화융합대학	뷰티디자인학과
미 용 향 장 학 사	글로벌문화융합대학	뷰티화장품전공
예 술 학 사	글로벌문화융합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체 육 학 사	예 술 체 육 대 학	체육학전공, 태권도학전공, 생활체육학전공

학 위 명	대 학	전 공 (학 과)
한 의 학 사	한 의 과 대 학	한의학과
간 호 학 사	보건의료과학대학	간호학과
보 건 학 사	보건의료과학대학	의료경영학과, 물리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놀이심리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임 상 병 리 학 사	보건의료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작 업 치 료 학 사	보건의료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별표3) (삭제 2018.01.23.)

변경(2018.08.30)

별지 제1호 서식

제 00000 호

학 위 증

성 명 ○ ○ ○

0000 년 00 월 00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학과(부)	○○○○전공	(○○ 학사)
복수전공	○○○○학과(부)	○○○○전공	(○○ 학사)
융합전공	○○○○학과(부)	○○○○전공	(○○ 학사)
부전공	○○○○학과(부)	○○○○전공	

0000 년 00 월 00 일

상지대학교 총장 ○ ○ 박 사 ○ ○ ○

학위번호 상지대0000(학)0000

변경(2018.08.30)

별지 제2호 서식

제0000호

학 위 증

성 명 : ○ ○ ○
0000년 00월 00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0000학과(부) 0000전공 (공학사 : 0000심화)
복수전공 0000학과(부) 0000전공 (○○ 학사)
융합전공 0000학과(부) 0000전공 (○○ 학사)
부전공 0000학과(부) 0000전공

0000 년 00 월 00 일

상지대학교 총장 ○ ○ 박 사 ○ ○ ○

학위번호 상지대0000(학) 0000